Harrington Place

효성해링턴 플레이스 동수원 입주자모집공고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③항에 의한 축약본으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효성해링턴플레이스동수원.com) 및 해당 공고문 전문(한국 부동산원 청약홈 www.applyhome.co.kr)을 통해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I 사업주체 현황

구분	상호	주소	법인등록번호
시행수탁자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P&S타워)	110111-2867418
시행위탁자	대선건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60 (문래동6가)	110111-1085376
시공사	진흥기업㈜	인천광역시 컨벤시아대로 69 (송도동, 송도밀레니엄 807호)	110111-0006349

II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구분	건축감리	전기감리	통신감리	소방감리
회사명	㈜건축사사무소아라그룹	㈜삼우엠이피컨설턴트		㈜삼우엠이피컨설턴트
감리금액	1,892,000,000	267,000,000		338,000,000

III 공급위치 및 규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수원시 건축과 - 14372호(2024. 05. 14)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436번지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5층, 지상 29층 2개동 총 162세대 [특별공급 81세대(기관추천 16세대, 다자녀가구 16세대, 신혼부부 29세대, 노부모부양 5세대, 생애최초 15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7년 10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IV 공급대상

▣ 공급대상

(단위 : ㎡, 세대)

주택 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 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계		
2024000222	01	074.7362A	74A	74.7362	26.4173	101.1535	60.9882	162.1417	17.2629	54	6	5	9	1	5	26	28	2
	02	074.7743B	74B	74.7743	26.6347	101.4090	61.0193	162.4283	17.2717	54	6	6	10	2	4	28	26	2
	03	084.8465A	84A	84.8465	28.4273	113.2738	69.2387	182.5125	19.5983	27	2	2	5	1	3	13	14	1
	04	084.6396B	84B	84.6396	28.6658	113.3054	69.0699	182.3753	19.5505	27	2	3	5	1	3	14	13	1
	합 계									162	16	16	29	5	15	81	81	6

▣ 주택형 표시 안내

공고상(청약 시) 주택형	074.7362A	074.7743B	084.8465A	084.6396B
약식 표기	74A	74B	84A	84B

V 공급일정 및 장소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장소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2024. 05. 27(월) (청약Home 인터넷 : 09:00~17:30) (사업주체 견본주택 : 10:00~14:00)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견본주택 접수 :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966-1 ☎ 031-234-9010	• 일시 : 2024. 06. 04(화) • 확인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일반공급	1순위	해당지역 : 수원시 1년 이상 거주자 기타지역 : 수원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 거주자	2024. 05. 28(화) 09:00~17:30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2순위		2024. 05. 29(수) 09:00~17:30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또는 토스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신청유형 및 주택명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8. 05. 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 ~ 14:00)
▣ 기타 자세한 청약 방법은 모집공고(전문) 및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를 반드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VI 신청자격

▣ 특별공급 공급세대수

구분(약식표기)		74A	74B	84A	84B	합계
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1	1	1	1	4
	장기복무 제대군인	1	2	-	-	3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1	1	-	-	2
	장애인	1	1	1	1	4
	중소기업 근로자	2	1	-	-	3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경기도(50%)	3	3	1	2	9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50%)	2	3	1	1	7
신혼부부 특별공급		9	10	5	5	29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	2	1	1	5
생애최초 특별공급		5	4	3	3	15
합 계		26	28	13	14	81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특별 공급 각 유형에서 미달세대 발생 시 타 유형의 특별공급 낙첨자(동일한 주택형의 낙첨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경쟁 발생 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는 일반공급 중복 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 본인이 특별공급 간 중복신청 할 수 없으며 중복 청약 시 모두 무효처리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 · 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한차례의 특별공급 당첨),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r>
<tr><td>공급기준</td><td>▪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신청 시 배우자의 혼인 전 특별공급 당첨이력은 배제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 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처리방법</th></tr>
<tr><td colspan="2">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td><td>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td></tr>
<tr><td rowspan="2">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td><td>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td><td>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td></tr>
<tr><td>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td><td>모두 부적격 처리</td></tr>
</tabl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td></tr>
<tr><td>무주택 요건</td><td>▪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td></tr>
<tr><td>청약통장 자격요건</td><td>▪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td></tr>
</table>

▣ 일반공급 신청자격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r>
<tr><td>대상자</td><td>▪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원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td></tr>
<tr><td>청약통장 자격요건</td><td>▪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1순위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table>
<tr><th>구분</th><th>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th>그 밖의 광역시</th><th>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th></tr>
<tr><td>전용면적 85㎡ 이하</td><td>300만원</td><td>250만원</td><td>200만원</td></tr>
<tr><td>전용면적 102㎡ 이하</td><td>600만원</td><td>400만원</td><td>300만원</td></tr>
<tr><td>전용면적 135㎡ 이하</td><td>1,000만원</td><td>700만원</td><td>400만원</td></tr>
<tr><td>모든 면적</td><td>1,500만원</td><td>1,000만원</td><td>500만원</td></tr>
</table>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td></tr>
<tr><td>당첨자 선정방법</td><td>▪ 당첨자 선정 순서
•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③추첨
•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수원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수원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 거주자)
▪ ②가점
-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추첨제 적용비율
<table>
<tr><th>구분</th><th>가점제</th><th>추첨제</th></tr>
<tr><td>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td><td>40%</td><td>60%</td></tr>
</table>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에 따라 가점제 청약 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점수표
<table>
<tr><th>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th><th>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50% 적용)</th><th>점수</th></tr>
<tr><td>1년 미만</td><td>6개월 미만</td><td>1점</td></tr>
<tr><td>1년 이상 ~ 2년 미만</td><td>6개월 이상 ~ 1년 미만</td><td>2점</td></tr>
<tr><td>2년 이상</td><td>1년 이상</td><td>3점</td></tr>
</table>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는 전체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의 점수로 계산하며, 그 점수가 3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점까지만 인정
•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합산 시 17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7점까지만 인정
• 청약 전 반드시 배우자 본인이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하여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확인해야 하며, 향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시 배우자의 순위확인서 및 배우자의 당첨사실 확인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 적격함을 증빙해야 함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당첨사실 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의 청약통장이 가입되어 있으나, 순위확인서 발급 전 배우자의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적격증빙을 위하여 당첨자 발표 이후 계약전까지 배우자의 청약통장 유지 필요
• 가점제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1)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r>
<tr><td>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td><td>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름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함.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
4) 확인방법 : (1)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2)가족관계증명서, (3)혼인관계증명서(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4)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td></tr>
<tr><td>②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td><td>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을 의미함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3)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
-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4)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5)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초본, (2)가족관계증명서, (3)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td></tr>
<tr><td>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td><td>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td></tr>
<tr><td>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td><td>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및 제53조에 따름</td></tr>
</table>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1순위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 단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table>
<tr><th>단계</th><th>비율</th><th>내용</th></tr>
<tr><td>1단계</td><td>추첨제 물량의 75%</td><td>무주택세대구성원</td></tr>
<tr><td>2단계</td><td>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td><td>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td></tr>
<tr><td>3단계</td><td>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td><td>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td></tr>
</table>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td></tr>
<tr><td>비고</td><td>▪ 1순위 가점제 청약 시 유의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1순위 가점제 당첨 시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td></tr>
</table>

※ 기타 자세한 청약 방법 및 유의사항 등은 모집공고(전문) 및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반드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VII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④KB국민인증서, ⑤토스인증서 또는 ⑥신한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부동산원(모든 은행의 청약통장 가입자)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공고단지 청약연습"과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청약에 제한은 없습니다.
①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단,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를 거부하더라도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② [공고단지 청약연습]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
· 청약연습방법 :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함.

VIII 당첨자 발표 및 계약일정

▣ 일정 및 계약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계약체결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 일시 : 2024.06.04.(화) • 확인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또는 신한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일시 - 2024. 06. 17(월) ~ 2024. 06. 19(수) (10:00~17:00) • 장소 -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966-1 ☎ 031-234-9010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견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IX 공급금액 및 납부 일정

▣ 공급대금

(단위 : 세대, 원)

주택형 (약식표기)	세대수	분양금액	
		최저	최고
74A	54	598,300,000	673,700,000
74B	54	590,000,000	669,000,000
84A	27	688,000,000	772,600,000
84B	27	683,700,000	768,200,000

※ 상기 공급대금은 발코니 확장 및 플러스 옵션 등이 제외된 금액이며 동별, 층별, 호별 분양가가 상이하오니 당사 홈페이지 및 입주자모집공고(전문)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부일정

계약금(10%)		중도금 (60%)						잔금(30%)
1차(5%)	2차(5%)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회(10%)	6회(10%)	입주지정일
계약시	계약후 30일이내	24. 12. 20	25. 05. 20	25. 11. 20	26. 05. 20	26. 11. 20	27. 05. 20	

▣ 분양대금 납부 계좌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분양대금 계좌	KB국민은행	040001-04-221284	㈜무궁화신탁

X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임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금액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01292024-104-0001000	76,324,850,000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보증서 발급일을 말한다)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승인(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승인(동별사용검사)을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

XI 기타 사항

▣ 계약자 중도금 대출안내
- 분양사무소 및 견본주택은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시 대출 가능 여부를 결정할 수 없으며, 추후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개별 심사를 통해 대출 여부가 결정되므로 계약자는 본인의 대출불가 또는 대출 축소 사항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는 '중도금 대출 이자 후불제' 조건으로 전체 공급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대출알선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단, 정부정책 및 금융권 사정 등의 사유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중도금대출 약정기간은 중도금대출 최초 실행일로부터 시행위탁자와 대출취급기관이 별도 협약한 대출 만기일까지이며, 중도금 대출 이자 납부는 대출개시일부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발생한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시행위탁자가 대납하고 이후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단, 시행위탁자가 대납한 이자는 계약자가 시행수탁자에게 잔금납부 시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지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 이자는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개시일 전일까지 시행위탁자가 대신 납부하며,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계약자는 시행위탁자가 지정한 대출취급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및 자격가능여부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지정된 대출기관에 직접 문의하여야 하고, 이 경우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계약자 본인이 직접 공급대금을 납부(이와 관련 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행위탁자 및 시행수탁자에게 책임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대출 불가 사유로 공급계약 해지(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시행위탁자가 지정하지 않은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 받은 경우에는 대출이자 대납이 불가하므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이전이라도 계약자가 대출이자를 해당기관에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 기타 세부 내용은 모집공고(전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XII 분양 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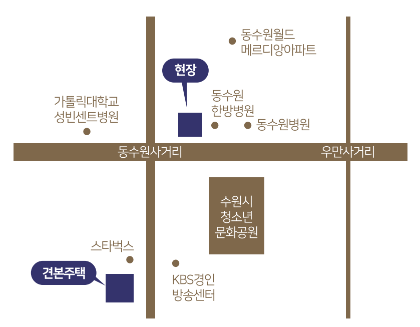

▣ 견본주택 위치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966-1 효성해링턴 플레이스 동수원 견본주택
▣ 홈페이지 : www.효성해링턴플레이스동수원.com
▣ 분양문의 : 031-234-9010
▣ 주요일정

특별공급	1순위(해당/기타 지역)	2순위	당첨자 발표일	계약기간
2024. 05. 27(월)	2024. 05. 28(화)	2024. 05. 29(수)	2024. 06. 04(화)	2024. 06. 17(월) ~ 2024. 06. 19(수)

※ 본 견본주택은 주차장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공급 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하며 본 공고와 공급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본 공고와 공급(분양)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분양)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행수탁자 무궁화신탁 MUGUNGHWA TRUST CO., LTD. 시행위탁자 대선건설 시공사 진흥기업㈜ / HYOSUNG